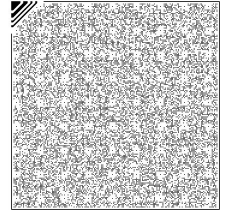


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(고시 제2020-271호) 안내

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를 일부개정하고, 개정 고시문[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71호(2020. 11. 30.)]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 → 정보 → 법령 →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
가. 개정사항: 신설 1항목

나. 시행일: 2020. 12. 1.(화)

2. 아울러 일선 요양기관에서 고시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, 각 협회 및 단체에서는 산하 지부 등에 동 개정 사항이 전파되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(사)대한의사협회장, (사)대한병원협회장, (사)대한약사회장, (사)한국병원약사회장, (사)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(사)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

주무관 이민지 약무사무관 최경호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전결 2020. 11. 30.

협조자

시행 보험약제과-3935 (2020. 11. 30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(정부세종청사 10동)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755 팩스번호 044-202-3935 / somnia113@korea.kr / 대국민 공개